

자판기 위생 점검 강화된다

식약청, 자동판매기 특별위생관리지침 마련해 지자체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해 위생검사 실태조사를 계기로 자동판매기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자동판매기 특별위생관리 지침」과 「자판기 음료 세균수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역별로 전담 배치해 매달 영업자 입회하에 온도관리, 위생상태, 1일 위생상태 점검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식약청은 우선 200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올 해초 각지자체에 배포를 진행했다. 협회에서도 식약청과 협의를 통해 이 지침을 입수하여 관련업체에 배포하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서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자판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식약청 입장에서 볼 때는 자판기 위생 불량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협회에서는 “위생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곳은 개인운영자들 로케이션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자판기 위생 문제를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필드에 직접 나가서 보면 문제가 되는 자판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라며 위생관리 강화 취지를 밝혔다.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관리지침」에 의하면 앞으로 기초 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자판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연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연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무신고 설치·운영 자판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며, 지도·점검 사항도 세분화된다. 특이한 점 한 가지는 캔커피 등 온장 보관 자동판매기에 품목에 대해서도 유통기관 경과 또는 보존 온도 준수 여부 등 위생지도·점검이 병행 실시된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는 올해부터 이러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관리지침」에 의해 자판기 위생 점검을 강화하게 된다. 자판기 운영자들이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미리미리 대비하여, 자판기 위생관리를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자동판매기(온장기) 위생관리

1) 목적

일회용 사용의 편리성 및 겨울철 온음료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상의 위해 사전차단

2) 추진방향

- (가)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
- (나) 미신고자동판매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운영 자판기 정비
- (다) 지역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전담배치 관리

3) 추진방법

(가) 자판기 점검횟수

- ① 기초자치단체는 관할지역내 자판기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간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점검 실시
- ② 광역자치단체는 관할지역내의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간 1회이상 점검 실시
-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고(위반사항 등)에 대한 확인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점검 실시

(나) 무신고 설치·운영 자동판매기에 대한 단속강화

- ① 신고기관 : 기초자치단체(일부는 읍·면·등에 신고 및 사후관리 위탁시행)
- 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무신고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소 파악 신고유도
- ③ 1차로 영업신고를 유도하고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무신고로 영업할 경우 고발조치
- ④ 담당공무원 확인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반드시 행정처분 조치

(다) 지도·점검사항

- ① 무신고 설치운영 여부
- ②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 ③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대한 하루 1회 이상 세척여부
- ④ 자판기 내부에 정수기 및 살균 등 작용여부
- ⑤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성명, 제품명칭 및 고장시 연락전화번호 등을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 ⑥ 자판기 전면 아크릴 점검표 부착 및 일일점검 기록 여부
- ⑦ 마시기에 적합한 먹는 물 사용 여부
- ⑧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⑨ 온장보관 판매 제품 보관시 주의사항 및 관리요령 등의 표시여부
- ⑩ 진열·보존·보관온도 등 보존기준 준수여부 등

4) 행정사항

- (가)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점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나)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시 영업신고대상 외의 캔커피 등 온장보관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도 유통기한 경과 또는 보존온도 준수여부 등 위생지도·점검 병행 실시



식품자동판매기 지도 · 점검표

업 소 명		신 고 번 호	제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취 급 품 목	커피류, 캔커피, 차류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 시설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신고 여부 ○ 식품자동판매기가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옥외에 설치된 자판기의 경우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양시설 설치 여부 ○ 마시기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최종응용온도가 70℃이상 ※자판기 외부의 디지털로 표시된 온도가 아닌 실제 제품 온도 측정 	
2. 영업자의 준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가공업 등에서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제품(완료)인지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여부 ○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급수등·급수호스 등) 하루 1회이상 세척 또는 소독 여부 ○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비치여부 ○ 쥐·바퀴등 해충이 자판기내부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고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아크릴로 된 점검표가 비치(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자판기에 영업신고 번호, 영업자의 주소·성명,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3. 기타	온장보관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도 유통기한 경과 또는 보존온도 준수여부 등	
4. 점검자 의견		

위와 같이 지도 ·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위생관리책임자)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성명 (인)